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1125호 2015. 10. 21.(수)

차 례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451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페이지(안) 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- 1451호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1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(안)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『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』 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 중단 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

2. 주요내용

- 우리 구 효도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에 의거 관련 조례 폐지

3. 의견제출

- 이 폐지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노인장애인복지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032-560-4971, FAX 032-560-2741 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.

2. 폐지이유

- 「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」과 관련 “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 현금성 급여지급 사업”에 해당하는 본 사업 폐지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▶ ‘15.4.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

3. 주요내용

- 우리 구 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서구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어,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·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중단 권고를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추진
 - ▶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년 설, 추석에 각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, 이는 기초연금과 유사 성격으로 분류되어 계속 지급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의거 기초연금 국가부담율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폐 지 안 : “별지 참조”

나. 신.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 없음”

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
라. 관계 법령 발췌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, 제4항
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1항
 「기초연금법 시행령」 제23조 제4항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사회복지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, 제4항

제20조(사회보장위원회)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7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

9.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
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

제23조(비용의 부담 등)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·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(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)을 부담할 수 있다.